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 
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 
(교육지원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93호
- 나. 제출자 : 고성미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라. 위탁 및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 및 제8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기초학력 보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
 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
  -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 - 안 제4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.
  - 안 제5조에서는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·장애여부·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6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
  -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  -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
-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(2021.9.14.) 결과에 의하면
  -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[교과별 '1수준(기초학력 미달)' 비율(%)] 추이를 보면,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고,
  -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은 수업참여도, 학업 및 학교만족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, 학생 간 학습 수준 차이의 심화를 초래하였으며
  - 등교수업이 확대된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의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습·심리·정서 등 단기간의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

【교과별 '1수준(기초학력 미달)' 비율(%)】

구분 연도	중3			고2		
	국어	수학	영어	국어	수학	영어
2019	4.1 (0.28)	11.8 (0.44)	3.3 (0.24)	4.0 (0.40)	9.0 (0.59)	3.6 (0.35)
2020	<b>6.4</b> (0.4)	<b>13.4</b> (0.59)	<b>7.1</b> (0.43)	<b>6.8</b> (0.52)	<b>13.5</b> (0.75)	<b>8.6</b> (0.64)
2021	<b>6.0</b> (0.33)	<b>11.6</b> (0.49)	<b>5.9</b> (0.33)	<b>7.1</b> (0.52)	<b>14.2</b> (0.83)	<b>9.8</b> (0.62)

- ※ 1.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
- 2. 통계적 유의도는 95% 신뢰구간(표본의 통계치±1.96×표준오차)을 활용함
- 3.   은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

- 상위법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학교생활 행복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# 기초학력 보장법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58호, 2021. 9. 24., 제정]

**제3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